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15호 2014. 11.11 (화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4-84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76차) 2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4-672호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 4
- 하동군 공고 제2014-683호 제11회 하동군자원봉사상 시상계획 공고 6
- 하동군 공고 제2014-687호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10
- 하동군 공고 제2014-699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결정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2
- 하동군 공고 제2014-702호 『하동군 구재봉 자연 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입법예고 17
- 하동군 공고 제2014-706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4
- 하동군 공고 제2014-711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28

회 람									
----------------	--	--	--	--	--	--	--	--	--

하동군 고시 제2014-84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76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1. 10.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송림길 51-16 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11.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3) 제 415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하동군진교면 송원리산96-4	경상남도하동군진교면 관곡송림길51-16	20141110	20070618	관곡리에 위치한 송림 마을명을 관곡송림길 이라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하동군적량면 동산리산188	경상남도하동군적량면 중도길20-4	20141110	20070618	중도라는 지명을 도로 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하동군횡천면 학리474	경상남도하동군횡천면 마치길35-11	20141110	20070618	마치라는 자연마을이 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하동군횡천면 여의리644	경상남도하동군횡천면 돌고지로7-15	20141110	20070618	횡천과 옥종의 경계지 점에 있는 재로서 재 를 넘을때 산모퉁이를 돌고 돌아 넘는다고해 서 돌고지재라고한 옛 지명 사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하동군양보면 우복리432	경상남도하동군양보면 양보로500-11	20141110	20070618	양보면 주요 간선도로 로 면이름을 사용하 여 도로명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하동군악양면 신대리77-3	경상남도하동군악양면 상신대길122-39	20141110	20070618	신대리 윗쪽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 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하동군악양면 정서리642-29	경상남도하동군악양면 정서길199-2	20141110	20070618	염등만수 정자 숲의 서쪽 마을에서 유래 된 정서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하동군화개면 탑리166	경상남도하동군화개면 쌍계로236	20141110	20070618	도지정 기념물 제21 호인 지리산 쌍계사 가는길로 탐방객의 인 지도를 고려하고 역사 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변경	경상남도하동군옥종면 가덕길14-4	경상남도하동군옥종면 가덕길14-8	20141110	20080402	덕은 더한다 하여 붙 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하동군화개면 정금리766	경상남도하동군화개면 정금대비길68	20141110	20090302	정금과서 대비로 이어 지는 도로로서 행정 리명의 명칭을 합성하 여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하동군금남면 덕천리1394-3	경상남도하동군금남면 새장터길100	20141110	20090302	새장터라는 옛지명 반 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하동군양보면 박달리220	경상남도하동군양보면 봉곡길4	20141110	20090302	마을 앞산이 황새모양 의 지형이라 하여 붙 여진 자연마을이름 반 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하동군옥종면 인케리산119	경상남도하동군옥종면 옥단로1268-54	20141110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 면) 활용	

하동군 공고 제2014 - 672호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계획 공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일

하 동 군 수

1. 조사목적

현 생활폐기물처리장의 사용종료가 예상됨에 따라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입지후보지 선정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선정 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2. 조사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5. 1.28.

3. 조사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2와 관련

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 하동군 관내 발생 폐기물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하동군

다. 폐기물처리시설 종류 및 예상규모

1) 부지면적 50,000m² 이상

2) 폐기물소각시설 50톤/일 (여열회수시설, 발전시설 포함)

3) 재활용선별시설 10톤/일 (자동수선별시설)

4) 폐기물매립시설 30,000m² (매립용량 450,000m³) 이상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상지역 : 하동군 일원 (응모지역 우선)

마. 조사항목

- 1) 일반적 조건 : 부지면적, 진입로 개설, 유틸리티 (전기, 가스, 수도 등) 현황 등 일반적인 조건에 대한 조사
- 2) 사회적 조건 : 주변지역 현황, 토지이용현황, 지장물, 민원발생 소지, 환경기초시설 현황 등의 사회적 조건에 대한 조사
- 3) 환경적 조건 : 가시권 (경관), 생태계보전, 수질 (지하수 포함), 악취, 대기질 (분진 포함), 소음/진동 등 지역의 환경현황에 대한 조사
- 4) 경제적 조건 : 시공성, 폐기물 수집운반, 여열회수, 토지취득 용이성, 개략공사비 등의 경제적 조건에 대한 조사

4. 입지타당성조사 전문용역기관 : (주) 도화엔지니어링

5.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조사계획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하동군 환경보호과(055-880-2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제 415 호

하동군 공고 제 2014 - 683 호

제11회 하동군자원봉사상 시상계획 공고

우리군에서는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향상에 이바지한 우수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제11회 하동군자원봉사상 시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하 동 군 수

시상개요 : 개인, 단체 구분 시상

- 단 체 : 1개 단체
- 개 인 : 1인
- 시상내역 : 상패

후보자 추천

- 추천(신청)기간 : 2014. 11. 3. ~ 11. 24.(3주간)
- 후보대상 : 하동군 관내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 후보자 추천 : 군단위 사회봉사단체 대표자, 실과단소장, 읍면장
- 구비서류 :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 증빙자료(활동사진 포함)

수상후보 자격

- 우리군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단체는 구성된 지 3년 이상 경과)
2년 이상 자원봉사와 자원봉사 활동시간이 연 180시간 이상인 자(단체)
- 사회봉사 활동으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공헌한 자
- 본 자원봉사상을 받은 자(단체) 동일 봉사상을 받을 수 없음

수상자 결정

- 하동군 자원봉사상 심의회 심사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

기타사항

◦ 2014년 12월 종무식 때 시상 예정이며, 이외 궁금한 점은 하동군청 국제통상과 교류협력부서(880-2244), 또는 하동군자원봉사센터(880-65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추천서)

추 천 서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단체고유번호)	
	한 자		

위의 사람(단체)을 제11회 하동군자원봉사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붙 임 : 증빙자료 (활동사진 포함)

2014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추 천 자 : (인)

하동군수 귀하

(8) 제 415 호

추천서류(공적조서)

공 적 조 서(갑지)

주 소		성 명		생년 월일	
직 업		공적 기간			
공적개요 (요약서)					

“공적을 개조식으로 요약 작성”

“을지”

공적내용

“공적을 서술식으로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하동군공고 제2014-687호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오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가 격 기 준 일 : 2014. 07. 01.
2. 결 정·공 시 일 : 2014. 10. 31.
3. 결 정·공 시 필 지 수 : 2,150필지

읍·면	결정필지수	읍·면	결정필지수	읍·면	결정필지수
하동읍	167필	고전면	106필	북천면	59필
화개면	292필	금남면	288필	청암면	146필
악양면	205필	진교면	107필	옥중면	170필
적량면	127필	양보면	46필	금성면	223필
횡천면	214필				

4. 결 정·공 시 내 용 : 토지지면별 m²당 가격
(토지지면별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에 비치)

5. 이의신청 및 처리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14. 10. 31. ~ 12. 01.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서면)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우편 접수 가능
(전자민원)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온라인 민원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필지는 이의신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알려드리며,
-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하동군 홈페이지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055-880-212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년 10 월 31 일

하 동 군 수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6.27>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용	공시지가	원/m ²	의견가격
	신청사유		원/m ²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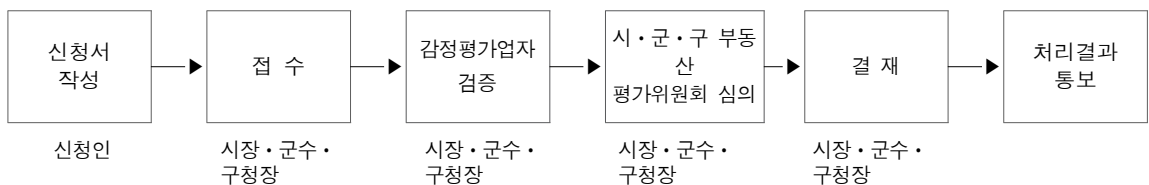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하동군 공고 제2014-699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결정 통지서 통보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하 동 군 수

1. 공고기간 : 2014. 11. 11. ~ 11. 25.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내용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결정 통지서
4. 기타사항

가.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055-880-20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경계결정 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1부.
 2.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1부.

경계결정 통지서 공시송달 내역(만지지구)

번호	토지소재	종전 토지			확정된 토지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지목	면적 (㎡)	증가한 면적 (㎡)	감소한 면적 (㎡)		
1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1163	대	85	1163	대	52.1		-32.9	김*홍	
2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1124-1	답	1365	1124-1	답	1330.4		-34.6	김*구	
3					1124-5	답	34.6	34.6		김*구	
4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산165-3	임야	318	산 165-3	임야	318.0			김*성	
5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산165-4	임야	246	산 165-4	임야	246.0			김*성	
6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1119-1	답	122	1119-1	답	122.0			김*유	
7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1127-1	도로	19	1127-1	도로	19.0			정*조	
8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1130-2	전	208	1130-2	전	299.5	91.5		지*수	
9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1164	대	201	1164	대	238.8	37.8		지*수	
10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1162	대	142	1162	대	142.0			최*선	

하 동 군 공 보

(14) 제 415 호

경계결정 통지서 공시송달 내역(중서지구)

번호	토지소재	종전 토지			확정된 토지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번	지목	면적 (m ²)	증가한 면적 (m ²)	감소한 면적 (m ²)		
1	하동군 적량면 서리	351-1	도	20	351-1	도	20.0			국*기홍	
2	하동군 적량면 서리	1266-2	도	102	1266-2	도	102.0			김*대	
3	하동군 적량면 서리	385-1	대	288	385-1	대	310.9	22.9		문*주	
4	하동군 적량면 서리	1342	답	1,336	1342	답	1,154.4		-181.6	문*주	
5					1342-1	답	123.4	123.4			문*주
6	하동군 적량면 서리	1354	답	393	1354	답	443.3	50.3		문*주	
7	하동군 적량면 서리	1344	답	84	1344	답	84.0			송*용	
8	하동군 적량면 서리	1345	답	2,554	1345	답	2,574.9	20.9		송*용	
9	하동군 적량면 서리	1241	답	631	1241	답	576.7		-54.3	송*석	
10	하동군 적량면 서리	1278	답	86	1278	답	129.4	43.4		송*석	
11	하동군 적량면 서리	1305	전	132	1305	전	132.0			신*열	
12	하동군 적량면 서리	1375	묘	329	1375	묘	329.0			안*현	
13	하동군 적량면 서리	1296	답	1,180	1296	답	1,180.0			윤*균	
14	하동군 적량면 서리	362	대	631	362	대	598.0		-33.0	윤*일	
15	하동군 적량면 서리	1372	답	556	1372	답	603.5	47.5		윤*일	
16	하동군 적량면 서리	1338-2	답	592	1338-2	답	520.6		-71.4	이*범 외 4	
17	하동군 적량면 서리	353-1	대	215	353-1	대	261.9	46.9		이*중	

하 동 군 공 보

(15) 제 415 호

18	하동군 적량면 서리	353-2	도	26	353-2	도	26.0			이*종	
19	하동군 적량면 서리	390-3	도	47	390-3	도	47.0			이*종	
20	하동군 적량면 서리	390-5	도	60	390-5	도	60.0			이*종	
21	하동군 적량면 서리	374	대	381	374	대	399.5	18.5		이*춘	
22	하동군 적량면 서리	1267	대	56	1267	대	56.0			전*환	
23	하동군 적량면 서리	1285	답	1,038	1285	답	1,038.0			전*환	
24	하동군 적량면 서리	1286	대	323	1286	대	493.0	170.0		전*환	
25	하동군 적량면 서리	1297	답	962	1297	답	962.0			전*환	
26	하동군 적량면 서리	366	대	1,222	366	대	1,128.9		-93.1	전*현	
27	하동군 적량면 서리	1268	대	155	1268	대	155.0			정*조	
28	하동군 적량면 서리	382	묘	1,509	382	묘	1,563.1	54.1		정*기 외 2	
29	하동군 적량면 서리	1369	답	2,340	1369	답	2,231.9		-108.1	조*수	
30	하동군 적량면 서리	1371-3	답	599	1371-3	답	599.0			조*수	
31	하동군 적량면 서리	1396-2	답	302	1396-2	답	302.0			조*수	
32	하동군 적량면 서리	1301-2	답	257	1301-2	답	198.0		-59.0	진*화 외 2	
33					1301-3	답	59.0	59.0			진*화 외 2

하 동 군 공 보

(16) 제 415 호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토지의 표시	시·군·구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종전 토지			
		확정된 토지			
면적 증감					

이의신청 사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20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하동군 공고 제 2014 - 702호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입법예고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일

하 동 군 수

1. 제정이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의 징수, 위탁관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나. 시설 예약 및 납부방법,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다.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라. 시설사용 제한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마. 위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참조 : 산림녹지과 전화 880-2488 FAX 880-2469, e-mail deouki@korea.kr)에게 그 의견을 **【별지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18) 제 415 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징수, 위탁관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리운영자”란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 하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 하는 사람(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6. “어른”이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공휴일, 비수기의 주말 등(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의 앞날)을 말한다.
8. “비수기”이란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명칭은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으로 하고, 위치는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산276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시설사용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설사용료) 휴양림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시설 예약 및 납부방법) ① 휴양림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방문의 방법으로 신청한다. 다만 비수기 단체숙박 및 수련관 예약은 전화 예약이 가능하다.

하 동 군 공 보

(20) 제 415 호

- ② 휴양림 시설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사용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 ③ 사용신청을 예약한 자는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설 사용을 예약하고 요금을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 입장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군수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람
- 2.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3. 삼화에코하우스 숙박객

제9조(시설사용 제한)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 2. 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 4.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이용객들의 피해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적정인원을 초과한 인원내 대하여 사용을 거부하거나 강제 퇴실시킬 수 있다.

제10조(입장의 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1. 전염병환자
-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제11조(행위제한) 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음주가무,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2.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불법취사 또는 각종 물품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행위
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4.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집하여 산림을 훼손시키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손상(파손, 파괴)시키거나 옮기는 행위
6.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관리운영자는 사용자가 휴양림 내 시설물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위탁관리 운영) ①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22조에 따라 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③ 그 밖의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수입금처리) 휴양림 수입은 하동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22) 제 415 호

[별표 1]

휴양림 시설사용료

(제4조 관련)

(단위:원)

구분	기준	이용기간	요 금		비 고	
			성수기	비수기		
숙박시설	숲속의 집 (단독형)	6인용(43.05㎡)투룸	1동/1일	120,000	100,000	
	숲속휴양관 (콘도형)	6인용(37~40㎡)원룸 8인용(45~47㎡)원룸	1실/1일	100,000 120,000	80,000 100,000	
객실이용요금 감면	장애인	1~3급	객실요금의 20%할인(비수기주중에 한함)			
	지역주민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주중에 한함)			
	다자녀가정 (1가정 1실에 한함)		객실요금의 20%할인(비수기주중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	1~3등급 4~7등급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주중에 한함) 객실요금의 20%할인(비수기주중에 한함)			
세미나실	100인 기준(405㎡)	1실/1일 (8시간 기준)	450,000	300,000	1실	
세미나실의 감면	하동군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요금의 30% 할인			
구분	기준	요금		비고		
		개인	단체			
주차료 (휴양림내 주차장)	대 형	5,000	5,000	숙박시설 사용자는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중소형	3,000	3,000			
	경 형	1,500	1,500			
입장료	어 른 청소년 어린이	1,000	800	동절기 (12~3월)에는 입장료 면제		
		600	500			
		300	200			
모노레일		인	1,000	800	에코어드벤처 시설 이용자는 면제	
에코어드벤처 시설	어린이코스	인	10,000	8,000		
	성인코스		15,000	13,000		
	스포츠코스		15,000	13,000		
	활강코스		5,000	4,000		

1. 숲속의집, 숲속휴양관 1일 사용시간은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 까지로 하며, 시간초과 시는 1일 사용료를 추징 할 수 있다.
2. 숙박시설의 1일 미만 사용 시에는 1일 사용료 징수한다.
3. 세미나실 1일 사용시간은 사용당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 숙박시설 인원초과 시 1인당 10,000원을 추징한다.

[별표 2]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제7조 관련)

구 분	유 형	반 환 기 준		비 고
		취소시기(사용개시일 기준)	반환비율 (총요금 기준)	
성수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 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사용예정일 3일전~4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②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9일전~7일전까지 취소	계약금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6일전~5일전까지 취소	계약금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4일전~3일전까지 취소	계약금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2일전~1일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비수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②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관계없음	전액반환	

※ 위는 예약 후 요금을 선납한 경우에 적용한다.

하 동 군 공 보

(24) 제 415 호

하동군 공고 제2014-706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안 입법예고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규칙)를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년 11 월 07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진흥 기금 설치·운영으로 효율적인 기업유치를 촉진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 하동군 자체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안 제9조제5항)
 - 기금의 용도(안 제9조2)
 -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9조3)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안 제9조4)
 - 나.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
 - 조례에서 정하는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관리·운영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안 제5조2부터 안 제5조3까지)
 - 기금의 용도(안 제5조2)
 -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5조3제1항)
 -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안 제5조3제2항)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1월 27일까지 하동군(참조 : 국제통상과 전화 880-2638, FAX 880-2869 e-mail)에게 **【별지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제·개정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등”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등”으로 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12.31.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9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2(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지원 보조금
2. 산업용지 구입 및 임대
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3(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과장이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9조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4(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2(기금의 용도) 조례 제9조2제3호의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범위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5조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3(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르는 계약 및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② 기타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입법예고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일

하 동 군 수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법령 및 도 조례의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추가(안 제6조)
- 나. 자율관리협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 다.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라. 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 마. 간판의 외국어 병기(안 제11조)
- 바.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기간 지정(안 제19조)
- 사.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안 제25조)
- 아.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이 도지사권한으로 이관되거나 상위법령으로 격상됨에 따라 해당조문을 삭제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참조 : 도시건축과 건축행정 전화 880-2136)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붙임서식)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동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 동 군 공 보

(32) 제 415 호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 나. 군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 다. 그 지역의 군의회 의원
 2. 주민협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③ 주민협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주민협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협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 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2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하 동 군 공 보

(34) 제 415 호

2. 세로 규격이 4미터 이상인 가로형 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 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공정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9조(현수막의 게시기간 등) ① 영 제8조제3호에 따른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지정게시대의 이용범위 확대를 위하여 민원용 10일 이내, 행정용 30일 이내로 하되 연장은 할 수 없다. 다만 재신청은 현수막 게시대 수급상황에 따라 재신청기간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다.

하 동 군 공 보

(36) 제 415 호

② 군수는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게시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철거하여 폐기할 수 있다.

제20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22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3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3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 4.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하 동 군 공 보

(38) 제 415 호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안전점검을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4호 중 “제2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한다.
2. 제5조“(위원회의 설치)”를 “(기금의 운용관리 심의)”로 하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두되,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하동군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를 “사항 심의는 하동군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에서 한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1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비고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25만원	
- 3.1㎡ 이상 4.0㎡ 이하	3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0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0만원	
- 6.1㎡ 이상 7.0㎡ 이하	60만원	
- 7.1㎡ 이상 8.0㎡ 이하	70만원	
- 8.1㎡ 이상 9.0㎡ 이하	8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0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0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2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4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6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80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 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25만원	
- 3.1㎡ 이상 4.0㎡ 이하	3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0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0만원	
- 6.1㎡ 이상 7.0㎡ 이하	60만원	
- 7.1㎡ 이상 8.0㎡ 이하	70만원	
- 8.1㎡ 이상 9.0㎡ 이하	8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0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0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2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4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6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8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 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	
	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하 동 군 공 보

(40) 제 415 호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
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30만원
- 0.6㎡ 이상 1.0㎡ 이하	33만원
- 1.1㎡ 이상 2.0㎡ 이하	38만원
- 2.1㎡ 이상 3.0㎡ 미만	45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50만원
- 3.6㎡ 이상 4.0㎡ 이하	60만원
- 4.1㎡ 이상 4.5㎡ 이하	80만원
- 4.6㎡ 이상 5.0㎡ 미만	90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100만원
- 6.1㎡ 이상 7.0㎡ 이하	120만원
- 7.1㎡ 이상 8.0㎡ 이하	140만원
- 8.1㎡ 이상 9.0㎡ 이하	16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180만원
4)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 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 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
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
형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3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3만원
- 3.1㎡ 이상 4.0㎡ 이하	38만원
- 4.1㎡ 이상 5.0㎡ 미만	45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0만원
- 6.1㎡ 이상 7.0㎡ 이하	60만원
- 7.1㎡ 이상 8.0㎡ 이하	70만원
- 8.1㎡ 이상 9.0㎡ 이하	8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0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0㎡ 이하	10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2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4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6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8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200만원
- 25.1㎡ 이상 30.0㎡ 이하	230만원
- 30.1㎡ 이상 35.0㎡ 이하	240만원
- 35.1㎡ 이상 40.0㎡ 이하	250만원
- 40.1㎡ 이상 45.0㎡ 이하	260만원
- 45.1㎡ 이상 50.0㎡ 미만	280만원

하 동 군 공 보

(41) 제 415 호

<p>5) 연면적 50㎡ 이상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p>	<p>300만원 +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p>
<p>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p>	<p>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p>
<p>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p>	<p>60만원 +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0만원 50만원</p>
<p>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p>	<p>7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p>	<p>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p>
<p>2) 교통안내소</p>	<p>7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p>	<p>가로형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p>
<p>4)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p>	<p>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p>
<p>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p>	<p>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p>
<p>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p>	<p>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p>
<p>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p>	<p>150만원 150만원+ 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하 동 군 공 보

(42) 제 415 호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 가로형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3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		

하 동 군 공 보

(44) 제 415 호

[별표 3]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비고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2,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도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24,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1,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10,000원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3,000원	
라. 공연간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3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12,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0,000원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2,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4,5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3,000원	

하 동 군 공 보

(45) 제 415 호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3,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3,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5,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하. 벽보(1건)	2,500원	
거. 전단(1건)	2,500원	
너.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 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 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하 동 군 공 보

(46) 제 415 호

[별표 4]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5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 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 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 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 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 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5]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5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비고
<p>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p> <p>가. 입간판</p> <p>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p>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p>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p>라) 연면적 3㎡ 이상</p> <p>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p>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p>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p>라) 연면적 3㎡ 이상</p> <p>나. 현수막</p> <p>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p> <p>가) 면적 3㎡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p>법 제20조제1항 제1호</p>	<p>12만원</p> <p>17만원</p> <p>25만원</p> <p>33만원</p> <p>42만원</p> <p>58만원</p> <p>67만원</p> <p>92만원</p> <p>117만원</p> <p>130만원+ 연면적 3㎡ 초 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7만원</p> <p>10만원</p> <p>13만원</p> <p>17만원</p> <p>25만원</p> <p>42만원</p> <p>50만원</p> <p>58만원</p> <p>75만원</p> <p>80만원+ 연면적 3㎡ 초과 하는 면적의 0.5㎡당 8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8만원</p> <p>12만원</p> <p>13만원</p>	

하 동 군 공 보

(48) 제 415 호

<p>나) 면적 3㎡ 이상 5㎡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p>다) 면적 5㎡ 이상 10㎡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p>라) 면적 10㎡ 이상</p>		<p>17만원 22만원 25만원</p>
<p>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p>		<p>33만원 50만원 58만원</p>
<p>다. 벽보</p> <p>1) 일반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80만원+ 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증가</p> <p>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3천원</p> <p>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p>
<p>라. 전단</p> <p>1) 일반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장당 8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17천원</p> <p>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p>
<p>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p> <p>가. 30일 이상 90일 미만</p> <p>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p> <p>다. 180일 이상 1년 미만</p> <p>라. 1년 이상</p>	<p>법 제20조제1항 제2호</p>	<p>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p>
<p>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p> <p>가. 연 1회 위반한 경우</p> <p>나. 연 2회 위반한 경우</p> <p>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p>	<p>법 제20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p>	<p>80만원 200만원 500만원</p>

하 동 군 공 보

(49) 제 415 호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하 동 군 공 보

(50) 제 415 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 등의 내용							관리자			⑱ 변 경 사 항	⑲ 비 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주 주 명 의 인 신 분 자 인 신 분 자 인 신 분 자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⑯ 주 소	⑰ 전 화 번 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 필**

표 시 기 간
. 까지

하동군수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하 동 군 공 보

(52) 제 415 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

구비서류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하 동 군 공 보

(54) 제 415 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	-----	-----	----	-----

< 앞 쪽 >

<p>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100px; margin: 10px auto; text-align: center;"><p>사 진 (3.5×4.5)</p></div> <p>하 동 군</p>

< 뒤 쪽 >

<p>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p> <p>자 격 기 한 (20 . . . ~ 20 . . .)</p> <p>「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 명함</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하 동 군 수</p>
--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공 보

(56) 제 415 호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 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 물 등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	② 광고물 종 류	③ 표 시 내 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반장소 ·위치	⑧ 담 당 (취급)자	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하 동 군 공 보

(58) 제 415 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하 동 군 공 보

(60) 제 415 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9조 및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하 동 군 공 보

(62) 제 415 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	----------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하동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하 동 군 공 보

(64) 제 415 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제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하 동 군 공 보

(65) 제 415 호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처리기간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신청서		30일	
신 청 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업소명 (단체명)		
	④주소		
⑤영업장 소재지		⑥전화번호	
<p>「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하 동 군 수 귀 하</p>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		없음	

하 동 군 공 보

(66) 제 415 호

[별지 제17호서식]

제 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서			
수 탁 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업소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업장 소재지			
⑥위탁기간		20 ~ 20 (년 월)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